

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4월 4일 삼척시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4월 4일

다. 심사일자 : 제4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 제1회 총무위원회(95. 4.10)에서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김태용)

가. 제안이유

『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. 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통합이전
기구성된 협의회가 94.12.31자로 자동 해체되므로써,
신설협의회의 재구성시 통합시에 걸맞는 기능이 강화된 협의회를 구성하므로써,
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
일익을 도모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"현행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,
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"를 "20인이내의 위원"으로 구성한다로 개정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흥원표)

WTO 출범, UR 협상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당초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 보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